

제2855호
2021. 8. 9.

발행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편집인: 홍보 전 산 과 장 김 영 혜
 전화: 3396-4951
 (http://www.junggu.seoul.kr)

선	기관의장
람	

구 보

● 자치법규

[입법예고]

제2021-609호 : 서울특별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제2021-617호 :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5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행정정보→구보/입법예고) 클릭>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TEL.(02)3396-4951 / FAX.(02)3396-9022/3
 ● 구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이며,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
 ※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람											
----	--	--	--	--	--	--	--	--	--	--	--



자 치 법 규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1-609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
·규칙심의회, 규제개혁 위원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
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8월 5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직자윤리법」이 개정(’20.12.22. 공포, ’21.6.23.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기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확대[안 제3조]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을 현행 3명에서 5명(총 위원 수 현행 5명에서 7명)으로 2명 증원

나.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자격요건 조문 정비[안 제3조]

-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의 자격요건 중 ‘법관’을 ‘판사·검사·변호사’로 개정하여 「공직자윤리법」상의 조문(제9조)와 일치하도록 정비

다. 기타 오타자 및 문구 정비[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는 2021년 8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감사담당관, 주소 :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감사담당관, 전화 : 02-3396-4414, FAX : 02-3396-9015, e-mail : tiadiary@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중구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 및 구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첨부 1. 서울특별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5명”을 “7명”으로,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구청”이라 한다)”을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3명의 위원은 법관”을 “5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3명의 위원 중에서”와 같은 항 제2호 중 “2명의 위원 중에서”를 각각 “위원 중에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u>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u>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p> <p>1. 3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또는 시민단체(「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p> <p>2. 2명의 위원은 구의회 의원 1명과 구 소속 공무원 1명으로 하되, 구 소속공무원은 행정지원국장으로서 한다.</p> <p>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이 호선한다.</p> <p>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3명의 위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p> <p>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의 위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p> <p>③ (생 략)</p>	<p>제3(구성) ① ----- -----7명-----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 -----.</p> <p>1. 5명의 위원은 <u>판사검사변호사</u>, ----- ----- -----</p> <p>2.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1. -----위원 중에서 -----.</p> <p>2. -----위원 중에서 -----.</p> <p>③ (현행과 같음)</p>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1-617호

이 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8월 6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부서간 업무 이관에 따른 규칙 개정사항 반영

2. 주요내용

- 도심재생과 업무 일부를 주택과로 이관함에 따른 사무 조정
 - 시행규칙 제18조 및 제19조 관련

- 도심재생과 및 주택과 소관 분장사무 구체화
 - 시행규칙 제18조 및 제19조 관련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행정지원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17 (예관동)), 문의전화:3396-4512, FAX:3396-8603, 메일:agiwana@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첨부 : 1.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6호, 9호, 10호부터 13호를 삭제하고 7호를 6호로, 8호를 7호로, 14호를 8호로 개정한다.

제18조 15호를 9호로 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에 관한 사항”을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한다.

제18조 10호부터 12호를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 10.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 11.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 12.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에 관한 사항

제18조 16호를 13호로 하고 “정비구역 내 국·공유지 재산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비구역 내 재산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한다.

제18조 17호를 14호로 하고 “민영주택사업에 관한 사항”을 “주택법에 따른 민영주택사업,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한다.

제18조 18호를 15호로 개정한다.

제19조 10호부터 18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0.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사항
- 11. 도시재생정책 수립 및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 12. 도시생활성화지역 내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 13.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도시재생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

- 14.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및 희망지 사업에 관한 사항
- 15.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16.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 17.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 18.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도심재생과) 도심재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8조(도심재생과) 도심재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사항	<삭 제>
7. (생 략)	6. (현행과 같음)
8. (생 략)	7. (현행과 같음)
9. ~ 13. (생 략)	<삭 제>
14. (생 략)	8. (현행과 같음)
15.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에 관한 사항	9.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에 관한 사항

현행	개정안
10. <신설>	10.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11. <신설>	11.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12. <신설>	12.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에 관한 사항
16. 정비구역 내 국·공유지 재산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13. 정비구역 내 재산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17. 민영주택사업에 관한 사항	14. 주택법에 따른 민영주택사업,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관한 사항
18. (생략)	15. (현행과 같음)
제19조(주택과) 주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9조(주택과) 주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9. (생략)	1. ~ 9. (현행과 같음)
10. <신설>	10.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사항
11. <신설>	11. 도시재생정책 수립 및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12. <신설>	12.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현행	개정안
13. <신설>	13.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도시재생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
14. <신설>	14.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및 희망지 사업에 관한 사항
15. <신설>	15.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6. <신설>	16.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7. <신설>	17.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8. <신설>	18.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